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」 지침 일부개정 통보

1. 관련

가. 2024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'24.12.27.)

나.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(보험급여과-3612, '23.7.24.)

2. 「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」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하니, '25.1.1.부터 개정된 지침을적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

- (의뢰수가 차등 보상) 전자의뢰 활성화 위해 EMR 연계를 통한 전산 의뢰시, 의뢰 유형에 따라 진료의뢰료 I 차등 인상
 - * 1단계(병의원)→2단계(전문·종합병원) 50%인상, 2단계(전문·종합병원)→3단계(상종) 100%인상
- (환자부담 차등 개선) 환자 요구, 의료진 판단에 따른 상급진료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여, 의뢰사유에 따라 환자부담 차등
 - * (전자의뢰) (기준)본인부담 30% → (개정) 의사판단 본인부담 면제, 환자 요구 본인부담 30%
- (서식 개선) 충실한 의뢰에 필요한 요양급여의뢰서의 환자상태·진료 소견 중 필수기재 항목을 신설, 기재 여부 점검기능 추가
 - * 필수기재 항목 신설(주 호소 증상, 의심 상병, 명확한 의뢰사유), 환자상태·진료소견 항목 세분화(환자 과거력, 투약력 구분), 기재항목 점검 위한 팝업기능 신설
- (의료이용 관리 기반 마련) 의뢰·회송 환자의 의료이용 모니터링을 위해, 해당 병원 진료 단계에서 의뢰·회송번호 기재하여 청구

나. 시행일 : 2025.1. 1.(수)

붙임 1.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(안) 1부.

2.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각 시범사업 참여기관장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

주무관 김준혁 보건사무관 배윤영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전결 2024. 12. 31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706 (2024. 12. 31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4 / kjh1409@korea.kr / 대국민 공개